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변경사항	[]명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기 타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	--	--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같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정정신고로 같음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